

성추행·조폭 유착...광주경찰 기강 해이 심각

도우미 공급업자와 금전 거래 등 부적절 접촉한 경찰 3명 감찰 적발 만취 성추행 경찰, 납치·성폭력 의심 신고 소극 대응에 지역민 불신

경찰이 만취해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유혹업소의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조폭폭력배와 수 차례 접촉하고도 관련 내용을 숨기는가 하면, 납치·성폭력 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사건을 축소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수십년 전 영화 속에서도 그려질법한 부패 경찰의 행태가 수사권까지 넘겨받은 현재에도 여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찰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는커녕, 범죄 행위로 불신만 키우고 수사 과정에서 기본과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광주 경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북부경찰 소속 A경위는 지난 4일 밤 11시 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에서 밤길을 걷던 여성을 켜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발했다. 당시 A경위는 만취한 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광산경찰에게 검거됐다.

조폭과의 유착 의혹도 터져나오고 있다. 광주서부경찰 소속 B경찰 등 3명은 최근 유혹업소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조폭폭력배 출신 공급업자와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감찰이 진행 중이다.

해당 조폭폭력배 출신 공급업자는 최근 불법으로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서부경찰에 불합여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해당 공급업자는 10년 넘게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불법 도우미 알선·공급 행위를 해오다 구속됐지만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고, 이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다 다시 불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자와 현지 경찰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왔고 행동강령을 위반한 3명이 감찰에 적발됐다.

현행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 5조의 2)은 '경찰이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의 관계자

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되고, 공직·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서 내에서만 접촉해야 하며, 다만 현장 조사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접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사 서류 등 공문서에 기록해야 한다고도 규정돼 있다.

이들 3명의 경찰은 이같은 행위를 위반했으며, 담당 부서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혹이 커지는 모양새다. 금전 거래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경찰의 소극적 수사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는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최근 새벽 귀가길에 고한에 납치될 뻔 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도 강력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피해 여성은 범인이 뒤에서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고갔다고 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강력팀은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간 것만으로는 납치나 감금, 강도, 강제추행 등의 죄목을 미리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 사건으로 판단했다가 뒤늦게 강력사건으로 전환했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서부경찰의 경우 지난 3월에도 고속도로 휴게소부터 수십km를 쫓아온 30대 남성에 대한 피해 여성의 스토킹 신고를 '범죄 행위가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묵살했다가, 무책임한 대응이라는 전국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도망치는 등 일반인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찰들이 잇따르면서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에 대한 불신도 쌓이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감찰과정에서 전화통화 내용까지 확인이 되지 않아 자신들의 자백에 의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유착의혹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공원서 현충일 추념식 6일 오전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열린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모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최원배 기자choi@kwangju.co.kr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노동자 집단산재 신청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신청기로 했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집단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한국노총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이들은 7일 오전 광주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를 찾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들은 지난 1997~2012년 입사한 뒤 에어컨·세탁기, 냉장고 생산라인, 콤포트서 라인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해당 조합원들이 앓고 있는 목·어깨·허리·손목 부위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고 조립하는 광주사업장 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단을 상대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감독기관에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현장 조사를 거쳐 지난해 3억77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일본 기업 16곳 상대 징용피해 소송 10일 선고

국내법원 소송 중 가장 규모 커

일제에 강제징용 됐던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여러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사건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오는 10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당초 총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2015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법원이 올해 3월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으나, 일본 기업들이 뒤늦게 국내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면서 지난달 1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일본 기업들의 대리인들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해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씨를 비롯한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여학생 추행 전남 교사 2명 2심도 유죄

광주 교사 2명은 무죄 선고

고교 교실·복도 등에서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지역 교사 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한 이들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광주지역 교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교법 형사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

역 사립고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같은 학교 B씨에 대해서도 원심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재직 중이던 전남 모 고교에서 제자들의 어깨, 팔뚝, 무릎 등을 만지는가 하면, 뒤에서 켜안거나 허리 부위를 휘어잡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경우 1심과 항소심에서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학생들이 모함한 것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친근감과 격려의 표시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항변했지만 재판부

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는 학생들을 지도·보호해야 할 교사로 오히려 여러 학생들을 추행해 학생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A씨는 약감정으로 자신을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로 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반영했다. 재판부는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B씨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는 반면, 체육 수업 시간에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광주 모 고교 교사 C씨의 항소심에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업 중 성적 표현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교사 D씨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으로 무죄를 유지했다.

C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D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2016년 5~6월 학교 체육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피부가 좋다'며 팔뚝을 쓰다듬고 팔뚝을 붙잡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한 반면,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학생들끼리 체육 성적을 좌우하는 수행평가를 하도록 했다는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C씨가 평가 장소를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점, 당시 두 개 반이 같은 시각에 수업을 했는데 C씨 행위를 목격했다는 학생이 없고 피해사실을 여러 명에게 얘기했는데 들었다는 진술이 없는 점 등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돈돈한 지키자 국민건강!

실손의료보험!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